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황현아 연구위원

- 스투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201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및 경영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함
 - 현재 영국에서는 270개의 금융회사가 스투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스투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16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현재 2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45개 금융회사가 참여 계획을 밝힌 상태임
 - 스투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시장 및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코드는 총 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세부활동, 의결권 행사,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구성됨

- 정부는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 룰)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스투어드십 코드가 ‘실패한 주주 행동주의의 반복’ 또는 ‘연금사회주의’ 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감시·감독을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함
 - 기관투자자로서의 보험회사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로서 자산운용사(asset manager)에게 운용을 위탁하기 때문에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자산소유자로서 자산운용사를 적절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현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을 6~9%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향후 이들이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최근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¹⁾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침을 밝힘에 따라²⁾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8년 1월 31일 현재 자산운용회사 21개사와 자문사 2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³⁾ 자산운용회사 39개사, 보험회사 2개사(KB생명, KB손보), 증권회사 3개사, 은행 1개사가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임⁴⁾
 - 이처럼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 표제부터 매우 낯설고, 그 규범으로서의 형식(자율규제, 연성규범)과 내용(원칙 중심의 추상적 내용)이 기존의 금융 규제 및 지배구조 규제와는 상이하여 과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 및 투자대상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살펴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2.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상황



-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기관투자자가 갖는 자산수탁자로서의 지위와 투자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스튜어드십’이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

1) 연합뉴스(2017. 11. 9), ‘최종구,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글로벌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설명회...“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시 인센티브”)’

2) 연합뉴스(2017. 12. 1),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http://www.cgs.or.kr/index.asp?MenuIndex=E&SubIndex=1>)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현황(2018년 1월 31일 기준) 참조

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현황(2018년 1월 31일 기준) 참조

야 한다는 개념으로,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시 고객 또는 최종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감시 및 관여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함⁵⁾⁶⁾

- 현재 영국의 스투어드십 코드는 “스튜어드십이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전략, 실적, 위험, 자본구조, 지배구조에 관한 모니터링 및 관여, 의결권 행사와 같은 대응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⁷⁾
- 영국의 스투어드십 코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범규준이고 참여 여부도 선택사항이나, 2010년 12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인가투자운용회사에 대해서 스투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시 대안을 보고하도록 한 이후 참여가 확산⁸⁾되어 현재 약 27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음⁹⁾¹⁰⁾

■ 일본은 정부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2월 26일 일본 스투어드십 코드(책임 있는 기관투자자 제원칙)를 제정하여 도입하였으며, 금융청이 참여 기관투자자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음

- 일본 스투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나 그 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에 기초를 둔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 등을 통해서 당해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고객·수익자의 중·장기적 투자수익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¹¹⁾
- 영국의 스투어드십 코드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 반면, 일본의 스투어드십 코드는 아베 정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본 특유의 보수적·폐쇄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²⁾

■ 미국은 노동부의 수탁자 규제(fiduciary rule) 도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2017년 1월 투자자 스투어드

-
- 5)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는 극히 영국적인 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고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법령, 계약 등에 의해 성립되는 위·수탁 관계에 국한된 개념인 ‘수탁자’라는 개념보다 넓은 의미에서 투자사슬에 관여하는 모든 자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의 효용이 있어 현재는 영국, 미국은 물론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6) 정윤모,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과 스투어드십 코드의 도입」,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16-03, p. 71~72
- 7) The UK Stewardship Code, Stewardship and the Code 4
- 8) 정윤모(2016), p. 76~66
- 9) 영국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 홈페이지(<https://www.frc.org.uk/investors/uk-stewardship-code/uk-stewardship-code-statements>)(2018. 2. 6. 기준) 참조
- 10) 참고로, 영국 스투어드십 코드 참여 회사는 2011년 234사, 2012년 259사, 2013년 290사, 2014년 295사로 증가하였으나(대신증권 지배구조연구실(2015. 8. 5), ‘한국형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에 대한 제언’, p. 14), 최근 270사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임
- 11) 일본 스투어드십 코드 원칙1, 지침 1-1
- 12) 정윤모(2016), p.79, 간사꾸히로유키(神作裕之)(2016. 6), 「일본판 스투어드십 코드와 자본시장」,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65호), p. 54 등 일본 스투어드십 코드 관련 대부분의 자료에서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음

그룹(Investor Steward Group: ISG)이 출범하였음

- 오바마 정부의 노동부는 고객이익 최우선 및 수수료 공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탁자 규제(fiduciary rule) 도입을 추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위 규정 도입이 연기되었음
- 그 사이 기관투자자들은 자율규제 형식의 투자자 스튜어드 그룹(ISG)을 출범시키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는데, 수탁자 규제라는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를 도입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¹³⁾

3.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정 및 주요내용



- 2016년 12월 16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되었고,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임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및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마찬가지로 자율규제의 형식을 띠고 있고, 그 내용도 세부적인 행위 규범이 아닌 원칙 중심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15년 3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출범한 후, 수차례 회의 및 공청회를 거쳐 2015년 12월 1차 초안이 공개되었고, 이후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코드 제정 취지에 따라 2016년 8월 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제정위원회를 재편하여 코드 제정 작업을 진행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¹⁴⁾을 출간하고,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주식 대량보유보고제도(5% 룰)¹⁵⁾ 개정을 추진¹⁶⁾하

13) 신장섭(2017. 12. 21),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정책 대안 -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한다’; 김중석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p. 67

14)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문제(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 공동보유 문제 등)에 관한 해석 지침

15) M&A 시장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상장회사 보유 지분 비율이 5%가 넘을 경우 그 주주로 하여금 이후 주식 변동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상 제도로써, 경영 참여 목적으로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엄격한 공시의무가 적용되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보고 의무가 적용됨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11. 9), ‘금융위원장, 외국 기관투자자들 앞에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다 - 금융위, 글로벌 기관투자자 「2017 회계개혁」 IR 개최’

는 등 스투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는 (i) “원칙”¹⁷⁾ 도입의 목적과 의의, (ii) “원칙”의 적용, (iii) 7개의 원칙 및 각 원칙별 안내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스투어드십 코드는 세부적인 행위 규범이 아닌 원칙 중심의 규범을 표방하고 있어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의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은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건실하고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함 - “원칙”의 목적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핵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세부내용을 제시하는 것임 - 기관투자자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와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 구별됨¹⁸⁾ 	
“원칙”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은 한국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내의 기관투자자에게 적용하며,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에게도 적용됨 -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참여를 선언한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적용되며, 참여 기관투자자들은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원칙을 준수하되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설명 및 공개하여야 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원칙에 대한 참여 및 이행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원칙	원칙 1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 및 공개
	원칙 2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방지정책의 제정 및 공개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수익 확대를 위한 주기적 점검
	원칙 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의 세부적 지침 마련
	원칙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공개/의결권 행사내역 및 그 사유 공개
	원칙 6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
각 원칙별 안내지침	(생략)	

17)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의미함

18) 자산운용자는 자산운용, 대상회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함. 자산운용사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함. 자산소유자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지시·평가 등 수단을 활용해 자산운용자가 효과적인 점검·관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 연기금, 보험회사 등이 자산소유자의 주요유형임(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원칙” 도입의 목적과 의의 6)

4.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찬반론



-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한국 주식시장 재평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한국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 동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음¹⁹⁾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이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제시됨²⁰⁾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효용이 없다는 점,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특유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있음²¹⁾
 -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최초 도입국인 영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 행동주의’ 내지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변형된 형태로서 약탈적 이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나 근로자 등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이는 연금을 통해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는 ‘연금사회주의’²²⁾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i) 자율규제 형식을 떠나 사실상 정부 주도의 규제라는 점, (ii)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기능의 효과적 수행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기업개혁의 수단으로 더 많이 강조되는 점, (iii) 국내 대기업의 대주주이자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민연금이 앞장서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왜곡된 형태의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비판하고 있음

1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20) 원중현(2017. 12. 28),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315

21) 이하의 내용은 신장섭(2017)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판점임

22) ‘연금사회주의’는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며 연금이 집합적으로 미국 기업의 최대주주이자 최대 채권보유자로 떠오르면서 제기된 개념으로, 표면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이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미국에서는 행동주의적 경향을 보인 일부 연금들의 비효율성과 권한 남용이 문제되고, 공공연금이 주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해 연금사회주의가 실제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음(신장섭(2017), p. 71)

-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기관투자자를 단순한 주주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볼 수는 없고,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 현재 기업 경영에 대한 각종 감시 장치(감사위원회제도, 사외이사제도, 소수주주권제도, 상장회사에 대한 공시제도 등)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 장치로서 기관투자자 및 투자대상회사 양측 모두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의 투입을 요구하게 됨
 -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종전 cut-and-run²³⁾형식의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개별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데 배분할 경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됨
 - 투자대상 회사의 입장에도 주주총회, 공시 등 기존 제도에 더하여 개별 주주인 기관투자자들의 경영 관여에 일일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논의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위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5.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보험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감시·관여를 받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함
- 보험산업의 2017년 1/4분기 기준 일반계정자산 중 주식 비중은 생명보험 4.3%, 손해보험 2.85%임²⁴⁾
 - 규모로는 각각 28조 1,181억 원(생명보험) 및 6조 7,562억 원(손해보험)에 이르는 금액으로,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자금 규모(2016년 말 기준 122조 6천억 원)과 비교해 볼 때에도 상당한 금액임

²³⁾ 투자대상회사의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보유 지분을 정리, 매각하는 방안

²⁴⁾ 보험연구원(2017), 『보험동향』, 2017 여름호, p. 70, p. 92

〈그림 1〉 주식투자 추이(생명보험)

(투자금액: 억 원, 수익률: %)



출처: 『2017 생명보험 Fact Book』, 통계 4-3, 주식투자 추이

- 보험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분류상 자산운용자가 아닌 자산소유자에 해당하며,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직접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KB생명과 KB손해보험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임
-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자뿐 아니라 자산소유자도 자산운용자에 대한 지시·평가 등을 통해 자산운용자가 효과적인 점검·관여 활동을 수행하도록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²⁵⁾ 보험회사도 이러한 범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5)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6

■ 한편, 보험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점검·관여를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로서의 지위를 가짐

● 현재 국내 기관투자자의 보험회사(상장)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기관투자자의 보험회사(상장) 주식 보유 현황

회사명	최대주주 지분율*	기타주주**		국내 기관투자자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한화생명	45.00%	Lazard Asset Management LLC	18.15%	예금보험공사	12.50%
삼성생명	47.03%	이마트	5.88%	국민연금	6.11%
삼성화재해상	18.51%	Genesis Asset Managers LLP	5.16%	국민연금	9.11%
현대해상	24.55%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Co.	6.94%	국민연금	7.91%
		BlackRock Fund Advisors	5.61%		
DB손해보험	23.26%	Matthews International Funds	5.09%	국민연금	8.97%

주: 상장 보험회사 중 기관투자자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함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게시된 각 회사의 분기보고서(2017년 3/4분기) 중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지분율: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합산한 지분율

** 기타주주: 대상회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중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국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주주

- 〈표 2〉를 보면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국내 상장보험회사 주식의 상당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은 현재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이라는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대한 점검 및 관여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험회사는 투자대상회사로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비한 적절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6. 결어



■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가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기관투자자 수익자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연금 등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도 이익이 될 것임

- 다만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기존의 각종 경영감시제도와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보험회사들은 기관투자인 동시에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지위와 관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자산소유자인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할 경우 어떻게 투자 대상회사의 경영을 점검·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장 보험회사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보험회사 경영에 대한 점검·감시 및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